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조정훈·서명옥·최수진

곽규택 • 이인선 • 유상범

박충권 · 최형두 · 조경태

김예지 · 이철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매년 기록하고 있음에도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회 제도의 정착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해결이 매우 더딘 상황임.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제도들을 원활하게사용하기 어려워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함.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휴가 허용 여부를 고려하거나 그 기간・시기에 대한 조정・협의 없이 반드시 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여건에 따라 시기·기간 조정이 가능한 여타 휴가와 같이 근로자가 '청구'하도록 표현함에 따라 사업주

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 태조사」에 따르면, 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로 나타났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그 성공률이 높지 않아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주기의 시술을 위해서도 과배란 유도, 초음파 검진, 난자 채취, 시술 등 여러 차례의 병원 방문이 필요함.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여성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6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휴가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 5.2%, 비정규직 6%로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도록 명 문화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출산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우에"를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구할"을 "사용할"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6일"로, "1일"을 "2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을 "청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u>경우에</u> 10일의 휴가를	<u>경우</u> 근로자가 원하는 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u>기에</u>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	③		
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			
일이 지나면 <u>청구할</u> 수 없다.	<u>사용할</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			
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에 연간 <u>3일</u> 이내의 휴가를 주	<u>6일</u>		
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u>1일</u> 은	2 <u>일</u>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u>청구하였는데</u> 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 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 9. (생 략)

④·⑤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ll 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2. (현행과 같음)
3
<u>청구하였는데</u>
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u>휴가를</u>
3의2. ~ 9.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